

의안번호	2215958
의 퇴 인	안철수의원
회 답 일	2026. 5. 8.
추 계 번호	25B684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억 8,000만원(연평균 3,600만원)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실태조사 (안 제58조의14)	36	36	36	36	36	180	36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태조사 실시 주기·방법 및 용역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8조의14(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실태조사)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해외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58조의15(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성조사 등)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음. 다만,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함(제1항) 1.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섭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의 제조·수입·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가. 외국 정부로부터 시정·수거 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한 시정·수거 등 나. 자발적으로 한 시정·수거 등 4. 그 밖에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8조의14(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실태조사) 신설	○	• 유사사례 참고
2	안 제58조의15(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성조사 등) 신설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이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안정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안정성조사 실시 사유의 발생 여부 및 건수 등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안정성조사의 실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실태조사(안 제58조의14)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구매·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비용은 유사 사례의 평균 실시 비용을 참고하여 추계함
 - －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실시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시주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나, 유사 사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유사 사례의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용역명 (실시년도)	실시기관	용역 내용	소요예산
소비자제품 사용 실태조사 (2026년)	산업통상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에 대한 사용 현황, 위해 경험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42
해외 리콜정보 기반 직구 플랫폼의 제품안전 실태조사 (2026년)	산업통상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해외 직구 플랫폼의 위해제품(해외 리콜제품)의 판매, 재유통 현황 및 차단조치 등 실태조사	30
평 균			36

자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용 참조

- 추계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억 8,000만원(연평균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직접구매 해외방송통신기자재등 의 실태조사	36	36	36	36	36	180	36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태조사 실시 주기·방법 및 용역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개정안 중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태조사 실시 주기·방법 및 용역비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